청과물 위(수)탁 판매약정서

출하주(“출하자”)_____



청과물 위(수)탁 판매 약정서

株式會社 인터넷靑果(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_____ (이하 "을"이라 칭한다) 간에 농산물 위(수)탁 판매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 (판매 위(수)탁)

"을"은 생산 또는 수집한 청과물의 판매를 "갑"에게 위탁상장하고 "갑"은 "을"에게서 수탁 받은 청과물을 경매 또는 입찰 방법으로 판매키로 한다. 다만, 경매 종료 후 도착한 청과물과 상품의 상태가 경매 또는 입찰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할 수 있다.

제2조 (판매위탁 통지)

"을"은 "갑"에게 청과물 판매를 위탁할 때에는 산지명, 출하주, 품명, 수량, 등급, 중량 등을 기재한 출하 통지서(표준 송품장)를 청과물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 (책임 한계)

"을"은 청과물을 "갑"의 판매장에 하차시까지의 제반 사항을 책임지고, "갑"은 하차 후부터 판매시까지의 제반사항을 책임진다.

제4조 (위탁상장수수료)

"을"은 "갑"에게 위탁한 청과물의 위탁 상장판매 수수료로 (____)%를 청과물 판매대금에서 지불한다.

제5조 (대금 정산)

①"갑"은 "을"이 위탁한 청과물 판매대금을 7일 이내에 "을"또는 "을"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송금(지정한 은행계좌 번호)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송금 수수료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을"또는 "을"의 대리인 송금계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을"은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제반 책임은 "을"이 진다.

③"갑"은 대금 정산 시 "을"이 부담하여야 할 운임, 선별료 및 판매를 위하여 발생한 제반비용을 판매대금에세 공제한다.

제6조 (출하장려금 지급)

① "갑"은 "을"이 본 약정에 의하여 판매 위탁한 청과물에 대하여 월간 판매가격의 (___)%를 익월 말일 까지 출하 장려금으로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단, "을"이 개인출하자인 경우 월 판매대금이 일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출하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정가 수의매매 및 전자거래로 약정된 판매 금액은 출하장려금 대상 판매가격에서 제외한다.

제7조 (판매유보)

①"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일 판매를 유보할 수 있다.

1.경매 종료 후 입하된 청과물을 경매, 입찰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없을 경우

2."을"이 경락을 유보하였을 경우

3.청과물의 상품성의 문제로 인하여 판매가 불가할 경우

②제 1항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한 청과물을 "을"이 인수하거나, 폐기 처분할 경우 운임, 상. 하차비, 보관료, 청소비등 제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8조 (업무수행)

"갑"과 "을"은 본 청과물 위(수)탁 판매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해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갑"이나 "을"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을"이 계속해서 1년 이상 출하하지 않을 때.

2."갑"이나 "을"이 청과물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3.본 약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불공정한 행위가 인정되었을 때

제10조 (약정기간)

① 본 약정서의 약정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출하자가 본 약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약정연장의 갱신거절 등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약정서의 해석)

본 약정서에 없는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할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운영조례 및 "갑"의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2조 (관할 법원)

본 약정으로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 년 _____월 _____일

"도매시장법인" (수탁자) 경기도 구리시 도매시장로 68 (인창동)

株式會社 인터넷靑果 대표이사 이동현 ㊞

대표전화 : 031-550-5100 F FAX: 031-550-5171

"출하자" (위탁자)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명 : (인)

[출하자 작성 부분]

출하자 구분	①농협 ②법인(농업회사,영농조합 등) ③산지유통인 ④작목반 ⑤개인출하자
출하자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번호 (개인출하자)	
주 출하품목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송금계좌번호	
팩스번호	
은행명 / 예금주	
거래 방식	①경매 ②정가수의매매 ③전자거래 ④온라인거래

※구비서류:

◎ 법인, 산지유통인, 작목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작목반 현황 1부, 통장 사본 1통.

◎ 개인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1부, 통장 사본 1부